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7. 7. 12.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6월 23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07년 7월 6일)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이 광 세)

- 가. 제 안 이 유
 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- 나. 주 요 내 용
 -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 (안 제2조제1항)
 -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부서장 변경 (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5조)
 - 사안별 위원회 회의 개최 및 회의통지 근거 신설 (안 제6조)
 - 각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

3.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(專 門 委 員 이 남 식)

- 2007.4.5.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』가 개정되어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편
- 안 제2조제1항에는 위원회 위원수를 “20명이상 40명이하”를 “15명이상 30명이하”로 축소 조정하였으며
- 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는 “행정국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 “자치행정과장”

을 “치수방재과장“으로 부서장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으로
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審査結課：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 (안 제2조제1항)
-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부서장 변경 (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5조)
- 사안별 위원회 회의 개최 및 회의통지 근거 신설 (안 제6조)
- 각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(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및 대상)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필요없음
- 기 타
 - 입법예고(2007. 6. 1. ~ 6. 18.) 결과 : 의견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」 제17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제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2. 해당 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3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4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

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치수방 재과장이 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으며, 회의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기술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서면검토를 할 수 있다

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검토의견 제출) ① 위원장은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② 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,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현지조사)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안별 지정위원·사업시행자·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록)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면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3. 검토사항
4. 토의진행사항
5. 위원발언 내용

6.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

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○○ 계획(사업)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

1. 총괄의견
2. 세부(분야별)검토의견
3. 기타 의견

상기와 같이 ○○계획(사업)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.

검토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